

서울고등법원 2022. 10. 26 선고 2022나200908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2. 10. 26 선고 2022나2009086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2. 10 선고 2020가합26458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대한민국

피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중

변론종결 2022. 10. 12.

판결선고 2022. 10. 26.

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2. 10. 선고 2020가합26458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4. 10. 체결된 분양권 증여계약을 65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,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. 17. 체결된 분양권 증여계약을 74,370,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39,37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삭제하고, 제7면 21행부터 제8면 14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- 제2면 15행의 “주식회사 D”을 “D 주식회사”로 변경한다.
- 제3면 8행의 “9. 28. C 아파트”를 “9. 18. E 아파트”로 변경한다.
- 제4면 8행(표는 행수에서 제외함)의 “판결”을 “판결 참조”로, 제6면 17행의 “판결 참고”를 “판결 참조”로 각 변경한다.
- 제7면 19, 20행의 “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5다51908 판결,”을 삭제한다.
- 제8면 20행의 “매수한”을 “증여받은”으로 변경한다.
- 제10면 4행의 “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목적물은”을 “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”로, 5행의 ”그 납입대금을“을 ”이 사건 각 아파트의 수분양권의 시가를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부된 각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

것으로서 그 납부된 분양대금 중 일부를“로 변경한다.

2. 변경 부분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3, 14호증,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5호증의 각 영상, 제1심 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피고와 B는 법률상 부부인 점, ② B의 부모 이후 피고는 두 딸과 함께 거주하고, B는 집을 나와 별거하게 된 점, ③ 피고와 B의 딸인 N은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, 피고와 B가 별거 이후 전혀 연락하지 아니하고 지낸 것은 아니고, 피고와 B의 별거 이후에도 N은 B와 교류하였다고 진술한 점, ④ 피고가 2016. 5. 12. B의 모친인 K로부터 울산 북구 L아파트 M호를 매수한 직후인 2016. 5. 27. B가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점, ⑤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재영, 판사 김경란, 판사 권혁중

별지